

제41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 (서면회의)

1. 회의일시 : 2010. 7. 12.(월)

2.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14층 회의실

3. 참석위원 : 최시중 위 원 장
이경자 부위원장
송도균 위 원
형태근 위 원 (4인)

4. 불참위원 : 없 음

5. 회의내용

가. 서면결의 사유

-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14조(서면결의)제1항제1호에 의거, 제2010-1차 전원회의(2010. 1. 14)에서 의결한 '토론을 요하지 아니하는 일상적·반복적 안건 또는 경미한 안건'에 해당됨.

나. 의결사항

1) 케이블TV 디지털 전환 관련 허위·과장 영업 행위에 대한 제재조치에 관한 건 - (2010-41(서)-159~186)

- 「방송법」 제100조제1항제4호에 의거, 케이블TV의 디지털 전환과 관련하여 허위·과장된 영업행위* 등으로 인해 시청자의 불만을 초래한 사유로, 7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해서는 '경고', 21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하기로 의결함.

※ 허위·과장된 영업행위 예시

- "국가 정책에 따라 디지털 상품에 가입하지 않으면 향후 TV를 시청할 수 없다"며 디지털 상품으로의 전환을 강요
- 디지털 상품에 대한 무료체험 권유 후, 가입자의 동의 없이 디지털 상품으로 전환 등

< 조치내용 >

종합유선방송사업자명	조치내용	위반내용	조치근거
(주)티브로드 한빛방송, (주)티브로드 ABC방송, (주)티브로드 기남방송, (주)티브로드 수원방송, (주)씨앤엠 중랑케이블티브이, (주)HCN 충북방송, 남인천방송(주) (7개 SO)	경 고	반복적으로 허위·과장된 방법으로 디지털 상품을 판매하여 시청자 불만을 초래	방송법 제100조 제1항제4호
(주)티브로드 강서방송, (주)티브로드 남동방송, (주)씨앤엠 경동케이블티브이, (주)씨앤엠 구로케이블티브이, (주)씨앤엠 마포케이블티브이, (주)씨앤엠 노원케이블티브이, (주)씨앤엠 북부케이블티브이, (주)씨앤엠 서서울케이블티브이, (주)C헬로비전 중부산 방송, (주)C헬로비전 중앙방송, (주)C헬로비전 가야방송, (주)C헬로비전 경남방송, 드림 씨티방송(주), (주)C헬로비전 북인천방송, (주)C헬로비전 충남방송, (주)C헬로비전 영남방송, (주)에이치씨엔, (주)HCN 금호 방송, (주)HCN 부산방송, (주)GS 울산방송, (주)JCN 울산중앙방송 (21개 SO)	주 의	허위·과장된 방법으로 디지털 상품을 판매하여 시청자 불만을 초래	